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1996. 12.

전 동 진

(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유지 및 통일과정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 가능성을 전망하고 협력분야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냉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실태를 개관하고, 둘째, 냉전이후시기 한·일 안보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①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으로서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미·일 동맹관계의 질적 변화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촉진하는 일본 국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②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 등의 협력범위와 한계를 분석한 후, ③한·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고찰한다. 셋째,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냉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냉전시기 한·일 안보협력은 한·일 양국의 국내외적 반발을 의식하여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냉전시기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안보정책을 전개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서방진영을 결속시켜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동맹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일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군사적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 우선 한국전쟁으로 주일미

군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본은 미군정하 일본의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으며, 한국전쟁 기간중 일본열도가 미국의 후방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체제 및 군사전략하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일간에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본격 개입하였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일 국교수립(1965. 6. 22)으로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전후처리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되었고, 한·일간 경제협력 증대로 일본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이익 시각을 반영하여 미·일 양국은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4항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 한·일 국교수립 및 이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 경제협력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대소 및 대북한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닉슨 독트린 이후 데탕트시기(1969~1979) 일본은 초반에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平和共存 및 現狀維持를 위한 남북한 등거리의 교를 추진하였지만, 베트남 패망 및 한반도 긴장고조,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자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재확인하였다. 일본은 동북아의 데탕트 潮流에도 불구하고 미·일 방위조약에 따른 한국과의 공동의 안보의식 및 안보유대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시기(1980년대) 일본정부는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에 따른 미국의 역할분담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한·일 안보협력은 레이건 미대통령이 대소봉쇄를 위한 한·일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과거에는 수면하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한·미·일 군사일체화가 공공연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지원, 둘째,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및 원조에 의한 한국경제의 안정이라는 경제·안보적 지원, 셋째, 평시 및 유사시를 일관하는 한·미·일 3군의 긴밀한 군사협력 태세 확립이다.

2. 냉전이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관계의 틀 특히 미·일간의 힘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인 바,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新아태 전략에 따른 미·일 동맹관계의 질적 변화와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 노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 한·일 안보협력은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냉전시기에 이루어져 왔던 군사·정보면에서의 협력과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을 매개로 한 한국안보에 대한 간접지원 등 종전 방식대로 계속되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보다 확대되고 치밀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국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비군사적인 한·일 안보협력은 KEDO 등 북한핵 및 경수로 지원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문제 등의 분야에서 사안별 정치·외교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대북정책: KEDO, 「4자회담」 및 대북 연착륙정책

냉전이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은 우선 양국의 급박한 안보위협 요인인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과 미·북한 관계개선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 바, 한·일 양국은 경수로 지원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 문제 등 KEDO내 협조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은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및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다발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바, 한·미 양국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4자회담」에서 자신이 제외되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북한과의 여러 접촉 경로를 통해 「4자회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對韓 협조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대북한 연착륙정책에 동참한다는 명분하에 북한에 대한 쌀추가지원을 고려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북한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북경에서 북한과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갖고 있다.

한편 대북 연착륙정책과 관련, 한·일 양국은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우려하여 가능한 한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대북 연착륙정책은 일본의 중유비용 부담 결정 및 쌀지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미국에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연착륙정책을 둘러싼 한·미·일간의 미묘한 의견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KEDO 및 「4자회담」 등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한 한 한·미와의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대북 연착륙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북한 관계개선시 독자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등 보다 유연한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협력

한반도 유사시 한·일 협력은 북한 핵문제나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등으로 유엔에 의한 경제·군사적 제재나 한·미·일에 의한 집단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와, 북한체제가 붕괴

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로서,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지원하고 수많은 난민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구하는 것이다. 1994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팽배해 있을 때 유엔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단행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 단행,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북한으로부터 주변 제국으로 유출되는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그 후 사태가 호전되자 연구를 중단하였으나, 최근에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증대하자 붕괴후의 사태를 겨냥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 동맹체제하에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미군의 개입을 원활히 하고 후방지역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 체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유사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제약 및 한·미와의 군사일체화를 우려하는 일본내 여론 때문에 한·일간의 협력은 미국을 중개로 간접적이고 선별적인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 한·일 군사교류

한·일 양국은 안보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신뢰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정부는 지금까지 양국의 국민감정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군인교류, 고위급 국방관계자의 상호방문 및 협의 등이 추진되었으며, 양국 군함의

상호방문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한·일 군사교류는 초보적인 신뢰 구축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없이 급속한 군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변국에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

라.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무대는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었다. ARF는 아·태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이다. 특히 제1차 ARF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지역안보 의제 중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며, 한·일 양국을 비롯한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 및 세계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역안보 의제로는 유일하게 회의종료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ARF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게 하는데 협력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이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하여 안보협력을 추진한 또 다른 무대가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였다. NEACD는 미국정부의 후원하에 비정부·

민간차원에서 1993년 7월 샌디에고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미·일·중·러 등 동북아지역 5개국간에 모두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 바, 한·일 양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불안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를 역내국가들간에 활발히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한·일 안보협력 방안

한·일 안보협력 방안은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의 비군사적인 안보협력과 군사적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군사적인 협력보다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의 비군사적인 안보협력, 즉 정치·외교적 안보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 「4자회담」 문제, 북한 연착륙 문제 등을 포함하는 대북한 정책 분야에서 한·일 안보협력 모색해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점진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한·일 군사협력은 안보대화, 군사교류, 군사협력(공동연구, 정보교환, 공동작전) 등 다양한 수준 가운데 일단 기본적인 신뢰구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안보대화나 군사교류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 한·일 양국은 북한 핵의혹 해소를 위해 IAEA에서 북한의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

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남북 상호핵사찰도 수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수로 지원과 관련, 한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소요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자회담」 문제와 관련, 한국은 일본의 대북접촉시 「4자회담」 수용을 촉구해 주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4자회담」에서 제외된 데 대한 불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4자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본과 즉각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북 연착륙정책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방향은 첫째,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식량사정이 호전되도록 북한에 쌀지원을 해 주어야 하나, 일본의 대북한 쌀지원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양해하에 남북관계 진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한·일 양국은 북·일 수교교섭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 과정에서 협조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군사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 한·일 양국은 향후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함정 및 인사교류 그리고 정보교환 등 신뢰구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 안보협력과 관련, 한·일 양국은 북한 및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에 대한 물품 및 수송지원 등 후방 병참지원 역할 정도만을 담당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한·일협력과 관련, 한·일 양국은 비정부·민간 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ARF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문제를 다루도록 하는데 있어 한·일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냉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3
1. 전후냉전시기(1945~1969)	3
2. 닉슨 독트린 이후 데탕트시기(1969~1979)	5
3. 신냉전시기(1979~1990)	10
III. 냉전이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17
1. 배경	17
가. 미·일 동맹관계의 질적 변화	17
나.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 노력	24
다.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38
2. 현황 및 문제점	41
가. 대북정책: KEDO, 「4자회담」 및 대북 연착륙정책	42
나.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협력	47
다. 한·일 군사교류	62
라.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	63

IV. 한·일 안보협력 방안	67
1. 기본방향	67
2. 세부 추진방안	70
가. 대북정책 협력방안	70
나. 군사협력 증진방안	72
다.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협력	74
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및 PKO 분야에서 협력	75
V. 결 론	78
참고문헌	80

I. 서론

냉전종결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역할 축소 가능성이 증대하고 일본의 역할증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한·일간 안보협력관계의 재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일 양국은 최근 1996년 4월 17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일본의 안보역할을 극동지역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유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북한의 휴전체제 무력화 시도 및 잠수함 침투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견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유지 및 통일과정에서 한·일간의 안보협력 가능성을 전망하고 협력분야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냉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실태를 개관하고, 둘째, 냉전이후시기 한·일 안보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①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으로서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미·일 동맹관계의 질적

변화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촉진하는 일본 국내외적 요인들을 고찰하고, ②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에 대한 일본의 협력범위와 한계를 분석한 후, ③한·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고찰한다. 셋째,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냉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1. 전후냉전시기(1945~1969)

냉전시기 한·일 안보협력은 한·일 양국의 국내외적 반발을 의식하여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냉전시기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범주내에서 자신의 안보정책을 전개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소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서방진영의 지도국으로서 서방진영을 결속시켜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였다.¹⁾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일본경제 부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전후 일본은 신중상주의적 요시다(吉田茂)노선에 따라 안보문제를 미국에 위임하고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더욱 가속적으로 전환되었고,²⁾ 한·미·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군사적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 우선 한국전쟁으로 주일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미군정하 일본의 치안 유지를

- 1) 石井修, 「冷戦と 美日關係」(東京: ジャパンタイムズ, 1989), pp. 38~53;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4), pp. 173~87.
- 2) 한국전쟁은 미국의 대일강화협상을 촉진시켰다.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일협상을 급진전시켜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켰다. 또한 미국은 과거 전범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해제하여 쓰가모 형무소에 감금되었던 이시바시(石橋, 1951년 6월 20일 석방), 하또야마(鳩山, 1951년 8월 6일), 기시(岸, 1952년 4월 28일) 등을 석방시켜 주었으며, 이후 이들은 차례로 수상으로 등용되었다. 岩永健吉, 「戦後日本の 政黨と外交」(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5), pp. 11~28; 桶渡由美, 「戦後政治と 日・米關係」(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0), pp. 51~67.

위해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³⁾ 또한 일본은 한국전쟁기간중 일본열도가 미국의 후방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체제 및 군사전략하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⁴⁾ 이에 따라 한·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

한편 한·일간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와 관련된 합의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미·일 안보조약 제6조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 있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여기서 「극동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극동유사시의 지리적 및 전략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일 양국의 안보문제를 상호 연결시켜 파악하였으며, 일본방위청은 한국전쟁의 재발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자위대의 對美 작전협력계획을 수립하였다.⁶⁾

-
- 3) 주일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의 대내치안문제가 제기되었는 바, 맥아더는 요시다에게 서한을 보내 75,000명이나 되는 국가경찰예비대를 조직할 것을 명하였다.
 - 4)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 국내 정치면에서 보수연합의 배경이 되었다. 岩永健吉, 「戰後日本の政黨と外交」, pp. 31~36.
 - 5) 극동조항과 관련하여 미·일간에는 사전협의 문제에 관한 추가협정이 있다. 1960년 6월 23일자 기시(岸)와 하터(Harter) 미국무장관과의 사이에 교환된 “미·일 안보조약 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극동조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 6) 구체적인 미·일 협동작전계획의 실례로 三矢作戰計劃(정식명은 昭和 38年度 統合防衛圖上研究, 63년), 飛龍(Flying Dragon)作戰計劃(65년, 정식명은 昭和 40年度 協同作戰計劃)과 부르란 작전계획(66), 金龍(Golden Dragon)作戰計劃(7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三矢計劃은 한반도 유사시 미·일 합동작전에 대하여 연구한 극비문서로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가상하

1960년대 들어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본격 개입하였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중재하였다.⁷⁾ 1960년대에 미국은 동북아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간의 적대관계 청산 및 양국관계 정상화를 설득하였는 바, 일본 정부는 전후처리와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한·일 국교수립(1965. 6. 22)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전후처리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되었고, 한·일간 경제협력 증대로 일본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각을 반영하여 미·일 양국은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4항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

한·일 국교수립 및 이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 경제협력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대소 및 대북한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⁸⁾

2. 닉슨 독트린 이후 데탕트시기(1969~1979)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은 중국 및 일본을 이용하여 소련세력에

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계획문서로 평가된다. 佐藤達也, 「朝鮮半島の軍事地圖」(東京: 社會評論社, 1985), pp. 49~62; 이상구, “한·미·일 군사제휴관계의 전개과정,” 「국제정치논총」, 제10집, 1970, pp. 73~74.

7) 김옥렬, 「韓國과 美·日關係論」(서울: 一潮閣, 1973), pp. 67~80.

8) 북한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小此木政夫, 「日本と北朝鮮」(東京: PHP研究所, 1991), pp. 93~101.

대항하기 위한 정책선언이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핵억지력과 군사지원은 계속하지만 병력 제공은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인도양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일본에게 소련 태평양함대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요청하였다.⁹⁾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역할 감축을 공식화하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 및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닉슨 독트린 이후 일본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반된 정책을 취하였다. 첫째,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이 감축됨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韓國의 안정을 위하여 對韓 經濟協力을 확대하였다.¹⁰⁾ 둘째, 미·중 화해를 계기로 데탕트분위기가 확산되자 일본은 한반도에서 안보 및 정치·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미국을 매개로 지나치게 연계된 한국과의 안보유대 관계를 상대

9)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은 專守防衛原則을 고수하면서도 미국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1972~1976)을 추진하였고, 남해 연안 및 류큐섬 등 남해도서의 전략거점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추진하였다. 永井陽之助, 「多極世界の構造」(東京: 中央公論社, 1973), pp. 271~304; 민족통일연구원 편, 「소련의 동북아정책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191~98.

10) 일본정부는 동북아 데탕트시기인 1971년부터 「청구권협정」에 의한 준비상과는 별도로 「한국의 안정」을 위한 對韓國 新規 無償協力과 엔차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對한국 경제협력은 제1차적으로는 미국의 대일 책임분담요구에 응하는 대미 안보협력의 일환이었다. 李元炯, 「日·韓外交交渉過程の分析」(慶應義塾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9), pp. 58~64, 95~100.

적으로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¹¹⁾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1971년 9월에 개최된 미·일 각료회담에서 “1969년 「사토·닉슨 공동선언」의 「한국조항」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사태에 개입될 것과 중·소·북한을 자극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냉전구조하에서 기초된 「한국조항」을 데탕트구조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1975년 「포드·미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조항」의 「한국」을 「한반도」로 대체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新한국조항」으로 대체되었다.¹²⁾ 또한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와의 협의하에 공식적으로 「두개의 한국정책」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는 바, 1977년 3월 22일 「후쿠다-카터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내지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유지가 계속 중요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였다”라는 「한반도조항」이 채택되었다. 이 「한반도조항」은 미·일 양국정부가 동북아의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결국 일본은 이 시기에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약화시

11) 일본은 1972년 제6회 한·일 정기각료회담 공동성명에서 이전의 회담과는 달리 한국의 안전에 대한 「북의 위협」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1974년 8월 29일 기무라(木村) 외상의 참의원 외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려고 하였다. 유석렬, 「남북한관계론」(서울: 정음사, 1985), pp. 361~72.

12) 이러한 「신한국조항」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데탕트구조가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한국의 안전」-「한반도의 안전」-「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3단계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한반도분쟁과 연동되어 있는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적 가동 절차에 일정한 제동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켜 상대화하는 동시에 남북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¹³⁾

그러나 베트남이 공산세력에 의하여 함락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일본은 1975년 4월 미야자와(宮澤) 외상을 워싱턴에 파견하여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한국조항」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국의 對韓防衛公約 遵守를 요청하였으며, 이어 8월에는 미끼 수상이 미국을 방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였다.¹⁴⁾ 또한 일본정부는 카터행정부 등장(1977.1.20)이후 한·미 양국정부간에 부각된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관계 악화¹⁵⁾ 인해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등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재강조하였으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승인함으로써(1978. 11. 28) 극동유사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시설 및 기지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사전협의」

13)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5집 2호(1992년 겨울), pp. 377~78.

14) 이에 따라 포드대통령은 12월 미국이 인도차이나정세의 급변 후에도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안보공약을 준수한다는 「신태평양독트린」을 발표하였다. 포드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공약을 금후에도 준수할 것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고려에 있어서 한국을 우선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15) 한·미관계는 카터정부가 「한국의 안전」과 동시에 「한국 민주화」를 중요시함으로써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카터대통령은 1982년까지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를 완료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을 비적성국가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시민의 북한 여행금지 해제 및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와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를 표명하여 대북접근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소위 코리아 게이트사건과 한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 등으로 한·미 양국간에는 전례없는 대립과 불화가 발생하여 1979년 여름 카터의 방한(6월 29일~7월 1일)과 주한미군 철수 중지 발표때까지 계속되었다.

방식에 합의하였다(제3항 극동유사시 미·일간의 협력).

요컨대 일본은 데탕트시기 초반에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平和共存 및 現狀維持를 위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였지만, 베트남 패망 및 한반도긴장 고조,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자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재확인하였다. 일본은 동북아의 데탕트 潮流에도 불구하고 미·일 방위조약에 따른 한국과의 공동 안보의식 및 안보유대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⁶⁾

이 시기의 구체적인 한·일간의 군사협력과 관련, 일본의 항공방위가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에 연계되어 양국의 조기경보 데이터 교환 뿐만 아니라 전투비행사들이 같은 암호(codes)를 사용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긴밀한 군사 협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해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소련잠수함 이동을 탐지하는 은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질적인 한·일간의 군사협력을 기반으로 1979년 7월 25일 야마시타(山下元利) 방위청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긴밀한 군사교류에 합의하였으며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및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한국의 군수산업 육성책에 일본기업이 합작회사의 형태로 참여하였다.¹⁷⁾

16) Reinhard Drifte,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in J. W. M. Chapman, R. Drifte and I. T. M. Gow, *Japan's Quest for Comprehensive Secur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 106~16.

17) Reinhard Drifte,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in J. W. M. Chapman, R. Drifte and I. T. M. Gow, *Japan's Quest for Comprehensive Secur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 106~16.

3. 新冷戰時期(1979~1990)

소련은 1970년대 형성된 미·일·중 3국간 전략협조관계 구축에 대응하여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¹⁸⁾ 이와 같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제7함대 및 태평양전지역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소련은 1978년 여름이후 일본과 영유권 분쟁상태에 있는 에토로후(擇捉)와 쿠나시리(國後)를 군사기지로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¹⁹⁾ 한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1980년대 신냉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은 서방세계에게는 소련 팽창주의의 실증적 증거로서 인식되었으며 서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²⁰⁾

18) 우선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1969년~1979년 사이에 소련지상군이 20개 사단 증가하였고, 장비도 탱크 T-62, 장갑차 BMP-1 미사일 SA-7 등으로 현대화되었다. 해군력과 공군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핵잠수함 수를 대폭 증강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 MINSK를 배치하였다. 공군도 MIG-23과 MIG-25와 같은 항공기로 현대화되었으며 SS-20 미사일과 BACKFIRE폭격기를 배치하였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소련은 1978년 6월 베트남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경제·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베트남의 캄란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Sidney Bearman, "Pouvoir et politique soviétique dans le tiers-monde: l'Asie orientale," in Christoph Bertram éd. *La Menace soviétique* (Nancy: Bibliothèque Berger-Levrault, 1981), pp. 194~98.

19) 일본은 이 섬이 일본 본토에서 17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블라디보스토크 및 페트로파블로스크 소련기지에서부터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소련 해상수송로 상에 위치하므로 소련의 조치가 일본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였다. Andrew Marshall, "Les sources de la puissance soviétique: la puissance militaire dans les années 80," in *La Menace soviétique*, p. 125.

2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1907년 「영·러협상」의 명백한 위반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영향권 분할을 규정

이에 따라 미국도 해외 군사·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맹정책을 취하였는 바, 일본 및 한국에 대하여 소련 군사력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분담 및 협력을 요청하였다.²¹⁾ 이로써 한·미·일 3국간 안보유대가 강화되었으며, 한·미(1981.1), 미·일(1981.5, 1983.11),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1983.1, 1984.9)을 통하여 이를 공식 확인하였다.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군, 일본자위대, 주일·주한미군의 무기 및 장비가 급속히 증강되었으며, 일본은 소련의 위협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대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다.²²⁾

한 1943년 「알타협정」의 위반이었다. 소련 영향권 범위 밖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소련의 침략은 극동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둘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서방국가들에게는 중동 유전지대 특히 이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일본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이 자신의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석유생산 지역 및 석유수송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인도양 접근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인도양은 1960년대 말 이후 영국의 뒤를 이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자신의 작전구역으로 연장하여 간주해 오던 지역이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으로부터 유래한 ‘스윙 전략’(Swing Strategy)에 따라 태평양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인도양을 장악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하였다. 田久保忠衛, 「レーガン戦略と日本の破局」(東京: 講談社, 1981), pp. 33~52.

- 21) 레이건정권의 등장이후 미국정부는 우호국의 국내정치보다도 안보체제를 우선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에 부차적인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지인 한국이 공업국가로서 성장함으로써 한국 자체가 미국의 국익상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결과 신냉전구조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격상되었다. 위의 책, pp. 52~59.
- 22) 지역방위론은 1981년 중전의 200해리(본토서남) 해상방위에서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선언한 스텔스수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나카소네수상은 1983년 1,000해리 해상수송로의 범위를 괌~도쿄, 대

신냉전시기 일본정부는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에 따른 미국의 역할분담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냉전시기 한·일 안보협력은 레이건 미대통령이 대소봉쇄를 위한 한·일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과거에는 수면하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한·미·일 군사일체화가 공공연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지원, 둘째,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및 원조에 의한 한국경제의 안정이라는 경제·안보적 지원, 셋째, 평시 및 유사시를 일관하는 한·미·일 3군의 긴밀한 군사협력 태세 확립이다.

첫째, 한국안보에 대한 정치적 지원과 관련, 1983년 1월 나카소네 일본수상이 서울을 전격 방문하여 전두환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다. 한·일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고 말하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처음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1983년 중 2차례(2월 및 11월)에 걸쳐서 개최된 레이건미대통령과 나카소네 일본수상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운명공동체”라고 미·일 동맹

만해협~오오사카로 명시하면서, 일본주변 3해협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해상에 대한 지역방위론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년간의 방위력증강계획인 「56 中期業務計劃」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의 제1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에서는 해상방위력 강화를 위한 원양에서의 공격용 무기의 도입계획이 포함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소련의 동북아 정책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 pp. 198~202.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4해협봉쇄」, 「일본열도불침항모화」를 위한 미·일간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미·일이 공동으로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회담을 통해 일본은 한·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1984년 9월 전두환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경제·안보적 지원과 관련, 한국은 1981년 8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일본에 대하여 “소련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향후 5년간 238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바, 이 중 일본이 100억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원조대상국으로 인식, 나카소네수상의 공식 방한(1983년 1월 11일~12일)시 40억 달러의 安保經協資金을 제공하였다.²³⁾ 일본외무성은 이 경협자금이 「민생안정」을 위한 對韓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군사력 증강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안보적 원조였다. 이에 대한 답례로 전두환대통령이 1994년 9월 일본을 방문하였다.

셋째, 군사협력적 측면과 관련, 한·일간에는 1)평시에는 ①한·일 군사교류의 추진, ②한·미·일 공동연습 및 훈련, ③방공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의 교환, ④한·미·일의 무기 표준화, ⑤대한해협의

23) 한편 나카소네 수상은 방한시 한·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방위력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일본수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영구, “한국 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권 5호 (1990년 5월), pp. 60~65.

공동감시 등이 이루어졌으며,²⁴⁾ 2) 유사시에는 팀스피리트형 긴급 군사파견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²⁵⁾ 유사시의 구체적인 군사협력으로는 ⑥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 및 편의제공, ⑦대한해협의 공동봉쇄, ⑧한국군에 대한 무기 및 탄약 등 물자 긴급 수송, ⑨한·미·일 3군의 통합작전사령부의 설립 등이 연구되었다. 3)戰時에는 「9일간전쟁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통합적인 핵공격체제의 확립과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 경우 소련에 대항한 군사작전 태세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시기의 한·일간의 군사협력관계는 평시상태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첫째, 한·일 군사교류와 관련, 1979년 7월의 야마시타 방위청장관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일 군인사간 교류가 긴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양국 연습함대의 상호 방문 및 일본의 방위대학에 한국의 육군사관생도들이 파견되는 등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두환대통령 방일시 이기백 합참의장이 수행하였고, 이어서 渡部 통합막료회의의장도 198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퍼레이드에 참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둘째, 한·미·일 3국간 공동연습도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팀스피리트 81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주재하는 방위청 간부가 견학 명목으로 참가하였으며, 팀스피리트 84에서는 한·미 양군의 작전행동에 맞추어 해상, 항공 자위대가 군사훈련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한·미·일의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미

24) 佐藤達也, 「朝鮮半島の軍事地圖」(東京:社會評論社, 1985), pp. 115~143.

25) 佐藤達也, 「朝鮮半島の軍事地圖」, pp. 146~183.

군으로부터 동맹국 작전순서와 연합교범을 도입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을 중개로 간접적인 한·일 연합군사체제 구축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셋째, 군사정보의 통합·일원화도 진행되었다. 군사정보는 모두 암호로 행해지지만 그 암호가 한·미·일간에 상이하면 3국간 군사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일간에는 촌음을 다투는 방공정보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 정보를 통합하는 등 한·일간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 바, 이러한 협력은 군사정보의 통합·일원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넷째, 한·일간에는 정보의 통합화와 함께 무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부터 긴급 수송될 무기, 연료 등 보급면에서의 통합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또한 해상 수송로 방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한해협 봉쇄작전을 위하여 한·일 군사당국자간 협의를 진행되었으며, 평시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소련 함정 특히 잠수함의 감시를 위해 양국간의 음향감시기를 통한 감시 업무면에서의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1982년 1월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도넬리 주일미군사령관은 1981년 11월 일본에게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행한 선례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구하였다. 즉 한반도 유사시에는 주일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²⁶⁾은 물론 미군에 의한 자위대 기지, 민간 공항 및 항만의 사용, 무기탄약 식량 등 전략물자의 조달과 수송, 그리고 구호활동이나 해난구조를 일본이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선박운항의 통제나 통신전파의 통제 등

26) 현행 미·일 안보조약하에서는 사전협의를 요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협력을 제의하였다. 한·일간의 한반도 유사시 군사협력 논의는 미국의 한국 지원에 따른 일본의 후방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 시기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대소 봉쇄전략의 최전선에 둔다는 인식하에, 일단 북한을 직접 대상으로 한·미·일 군사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일간에는 평시에 상응하는 군사교류와 유사시에 대비한 안보협력 연구가 진행되었다.

Ⅲ. 냉전이후시기의 한·일 안보협력

1. 배경

가. 미·일 동맹관계의 질적 변화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관계의 틀 특히 미·일간의 힘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는 바, 미국의 동북아 안보역할이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국력의 장기적인 쇠퇴, 일본정계의 보수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모색 등의 요인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긴밀화는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추세로 보인다.

(1) 미국의 新아·태전략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세계적인 지도력 유지와 경제적 안보이익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 아·태지역의 안보문제에 적극 개입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조셉 나이(Joseph Nye) 전국방차관보가 주도한 1995년 2월의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또는 「동아시아 전략 보고」(East Asia Strategic Report: EASR)를 통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아시아에 현재의 약 10만명의 미군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안보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개입과 확대」(engagement & enlargement) 정책으로 묘사되는 EAS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기존의 동맹국가에 대한 개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미·일관계는 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국간 관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즉 안보동맹, 정치적 협력, 경제관계 등이 주축이 되고 있는 미·일관계에 있어서 무역마찰문제가 안보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호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중·러 등 전통적인 비동맹국가들에 대해서는 포용의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위상강화에 따라 중국의 안보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의 정세안정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러 파트너십을 기초로 양국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안보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EASR은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이 지역국가들과의 동맹관계와 이에 따른 전진배치 전략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아·태안보전략에 근거하여 미국은 아·태지역 경제가 자국의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며, 안보면에서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역

27)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Region*(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효율적인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지역국가들에게 안보분담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신아·태전략에 따라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안보면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나 일본의 비용분담을 요구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을 미·일동맹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틀 내에서 증대해 나가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의 대외전략 변화

한편 일본은 외교 및 안보전략 면에서 독자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후 일본외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⁸⁾ 첫째, 세계적인 정치·안보관계를 다루는 고위정치(high politics)는 세계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고, 일본은 경제문제 등의 하위정치(low politics)에서 미국을 지원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둘째, 대외 관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즉 일본은 국가 경제발전 및 정세안정 최우선주의에 의거해 민감한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노선을 추종하여 가능한 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려 하였다. 셋째, 일본정부는 그들이 과거 식민지시대에 범한 과오 때문에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없었다.

28) 박경서, “최근 미·일관계 추이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책연구」, 통권 27호 (1993, 봄), p. 140.

그러나 걸프전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외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걸프전에 130억 달러를 재정적으로 제공하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人的인 안보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은 일국평화주의를 배척하고 ‘적극적 국제협조주의,’ ‘인류에 대한 공헌’ 등을 대외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유엔의 PKO활동에 대한 적극 참가²⁹⁾ 및 이를 통한 유엔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ODA제도 확충 및 개선, 대외정책 관련기관 및 체제의 정비·확대 등을 제안하고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일본 국내 정치체제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여 행정개혁 및 규제완화 등 국내 체제의 변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선두에 선 인물이 신진당 당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서, 그는 「보통국가론」을 제시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국내 정치체제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일본국내의 변화와 국제환경의 변화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치·외교적 역할 증대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안보전략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전후 방위정책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유지 및 방위 목적에 부합한 제한적인 군사력 보유를 원칙으로 진

29)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과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1992. 10. 14, 1993. 3. 26)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자문기구인 「방위문제간담회」도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기치아래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朝日新聞」, 1994. 7. 19.

행시켜 왔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군사정책은 미국의 극동전략하에서 변화·발전해 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특히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주력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 냉전종결 직전까지는 自助능력 향상에 진력하였다. 전반의 시기가 국내 치안 및 안보를 중시한데 비해 후반의 시기는 서방측 일원으로서의 의무 수행의 성격이 강했다.³⁰⁾

그러나 냉전종결로 강대국간의 전면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지역분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미국이 이러한 지역분쟁에 일일이 개입하기를 주저함에 따라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을 증대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제안보’라는 개념하에 국제적 안보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된 태도는 PKO참여 확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신방위계획대강」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³¹⁾

비록 일본이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미·일 안보체제내에서의 역할증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역할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증대해 나가면서 국제적 위상강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³²⁾ 즉 일본은

30) 연현식,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한국정치학회 1996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 7.

31)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32) 연현식,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가능성과 한계,” 「세계정치의 쟁점과 이해」(서울: 박영사, 1993), pp. 336~341.

대미 안보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원활한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안보역할을 보완하는 동시에 역내 다자안보기구 창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재래식무기 통제 실현, 유럽안보기구(OSCE)와 같은 국제적인 안보기구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국제안보분야에서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미국과 일본은 1996년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미·일양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 21세기를 위한 동맹)을 채택하였다. 이번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집중, 영토문제, 지역분쟁 가능성,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등을 지역내 불안정 원인으로 지적하고, 미·일 안보조약과 10만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공동인식하에 신공동선언은 미·일 안보체제 대상의 아·태지역으로의 광역화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미·일 군사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미·일 군사협력과 관련, 양국은 ①미·일간 아·태지역 군사정보의 분석·교환, ②양국방위정책 및 주일미군 구성 등 군사태세 협의, ③미·일 방

위협력 지침의 개정 합의, ④有事研究, 정책협조의 필요성, ⑤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의 긍정적 평가, ⑥ F2(차기 지원전투기) 등 군사기술 협력 강화 촉구, ⑦TMD 공동개발 촉진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³³⁾

이와 같은 미·일 신공동선언의 특징은 첫째, 구체적으로 미·일 안보체제의 모든 현안을 총망라하여 명시하고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미·일 안보체제의 상호성과 아·태지역 및 전세계 수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연구(즉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일본유사에서 극동유사로 개정할 것을 시사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는 일본헌법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와 무기수출 3원칙과 모순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넷째, 미·일 안보체제의 대상을 광역화했다는 점으로, “미국이 계속 군사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는 것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며, 미·일 안보관계는 미국의 긍정적인 관여를 지원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³⁴⁾

이와 같은 미·일 신공동선언의 의의를 살펴보면, 미·일 군사협력체제의 구체적 강화책 재확인으로 미·일동맹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항한 미·일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안보공동선언은 한반도 안보에 다음과 같은 긍정

33) 「朝日新聞」, 1996. 4. 17.

34) 「世界週報」, Vol 77, No. 19(1996. 5. 28), pp. 67~73.

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미·일공조를 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투수행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역내 안보산소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일본내에서는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둘째,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안보관심을 부활시킬 수 있고, 넷째, 한·미동맹에 비해 미·일동맹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인상을 줄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내세워 한국에게 역할분담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주둔군 지원(HNS) 증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미·일동맹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 노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를 기반으로 정치·안보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은 아시아 안보

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역할의 분담 차원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①군사력 증강, ②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③국내정치의 신보수화 정계재편 상황을 살펴본다.

(1) 일본의 군사력 증대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56中期業務計劃(1983~1987)」 및 「제1차 中期防衛力整備計劃(1986~1990)」을 통해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 등 지역적 군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해 왔고, 「제2차 中期防衛力整備計劃(1991~1995)」(총22조 7천5백억 엔)을 수립하여 이지스함 도입 등의 호위함 현대화, 최신예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 전진방어를 위한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³⁵⁾

또한 일본은 1995년 11월 안전보장회의에서 「新防衛計劃大綱」(표1참조)을 결정한 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14일 안전보장회의에서 자위대의 경량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6-2001)」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은 총 예산 25조 1500억엔을 計上하고 있으며, 전투장비면에만 약 4조 2800억엔을

35)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군축문제자료」, No. 151 (1993. 6), p. 66.

투입할 계획이다.³⁶⁾

일본은 1997년도 방위예산 편성을 계기로 냉전종식에 따른 부대 재편, 병력 조정과 첨단장비 도입 및 정보수집·분석 능력 제고에 역점을 둔 「방위력정비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7년도 「방위력정비추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신방위 계획대강」(1995. 11)에서 명시한 새로운 방위력 수준(後述)을 달성하기 위해 자위대 개편 등 병력 재조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나라들의 기술 향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의 갱신과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전투장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특히 1997년 방위예산은 금년 대비 2.88% 증액한 4조9,850억 엔(약 453억 달러) 중 전투장비 구입비로 1996년 대비 15.1% 증액한 9,610억엔(총 방위비의 19.4%)을 책정하여 노후된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에 신형 첨단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장비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³⁷⁾

구체적인 신규장비 조달 및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육상자위대는 61년식 전차를 1996년도 101대에서 66대로 감축하는 대신 첨단장비 장착으로 파괴력과 명중률 및 기동성이 뛰어난 90년식 전차를 136대에서 154대로 보강하였고, 105mm 포를 대량 폐기(56문 → 32문)하는 대신 155mm 곡사포 FH70 11대 및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9대를 조달하는 한편, 다용도 헬기인 UH-60JA(6대), UH-1J(3대), 수송용 헬기 CH-47JA(2대) 등을 구입하여 기동성을 보강할 예정이다.

36) 「朝雲」, 1995. 12. 21.

37) 園生一博, “自衛隊97年度業務計劃,” 「軍事研究」, 第31卷 第11號(1996年 11月), pp. 79~81.

해상자위대는 노후화된 호위함(58척 → 57척) 및 초계헬기(99대 → 97대)를 감축하는 대신 운항·작전체제 자동화로 인력 소요를 감소시킨 최신예 호위함 2척 및 수중탐지능력이 뛰어난 잠수함(SS)2척을 새로 취역시킬 예정이다.

항공자위대는 노후한 F-1 전투기를 감축(61대 → 59대)하는 대신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기를 96년 11대에 이어 97년에는 9대를 조달하고 구난헬기 V-107을 UH-60J 3대로 대체하는 한편, 지휘 연락·공수·훈련 지원 등 지원능력 향상을 위해 다용도 지원기 U-4 3대도 도입하기로 하였다.³⁸⁾

한편 일본은 자위대의 해상활동 범위를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식적으로 확대하여 일본의 방위 개념을 전수방위로부터 지역방위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1월이후 필리핀으로부터 일본 항공자위대 공군기가 필리핀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는 등 클라크 미군기지에서부터 태평양에 있는 영국기지를 지나 카이로에 이르거나 혹은 싱가포르-스리랑카-오만-카이로에 이르는 군사항공로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최근 미군의 필리핀 기지로부터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방위영역이 1,000해리 지역방위 이상의 지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또한 일본은 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생산·이용하는

38) 園生一博, “自衛隊97年度業務計劃,” pp. 81~83.

39) Jung-Suk Youn,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Summer 1992), p. 375.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대량 반입하고, 대규모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⁴⁰⁾ 이에 따라 일본은 핵무기 전환이 가능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사용하는 핵에너지 이용체제를 갖추게 되었다.⁴¹⁾

일본은 자국이 비핵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핵에너지 이용 계획은 환경오염 등 안전성의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손쉽게 핵폭탄 제조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재력 측면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말에 결정된 「신방위계획대강」과 19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의해 냉전이후시대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을 결정지었다. 「신방위계획대강」은 1976년의 舊 「방위계획대

40) 일본은 1992년 11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반입한데 이어 1993년 4월 28일 아오모리 현 룻카쇼무라(六ヶ所村)에 세계 최대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하였고, 1994년 4월 5일에는 후쿠이(福井)縣 쓰루가(敦賀)市の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를 시험가동시켰다.

41)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 계획이 핵확산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撫摩하기 위해 1994년 5월 18일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 플루토늄 수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고속증식로를 장래 원자력발전의 주력으로 삼고 2020~2030년경 실용화하기로 했던 1987년의 장기 계획안을 2030년경으로 다소 연기하였고, 2000년에 연간 3,000톤 규모로 계획했던 우라늄 농축 규모도 1,500톤 정도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일본 핵개발에 대한 외국의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朝日新聞」, 1994. 6. 14; 1994. 6. 27; 1994. 7. 3.

강」을 20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신방위계획대강」이 밝힌 채택 배경을 살펴보면, 냉전종결로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군사적 대치 구조가 해소되는 등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자위대의 임무가 일본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 및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안정적인 안보환경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공헌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향후 방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신방위계획대강」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신방위계획대강」은 냉전종결로 미·소간에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각종 영토분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종교상의 대립이나 민족문제 그리고 핵확산이나 테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신대강」은 일본 주변지역에 있어서 극동 러시아 군사력의 양적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고, 일본 주변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 수준을 「신대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²⁾ 즉 육상자위대 병력 8개 사단·6개여단·1개기갑사단 등 계 145,000명과 즉각 소집할 수 있는 예비자위관 15,000명, 기타 해상자위대 병력 4개 호위

42) 「朝日新聞」, 1995. 11. 29.

함-대군, 호위함 약 50척, 기타 항공자위대 군사력은 작전용 항공기 약 400기 등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新舊 「방위계획대강」 비교

	舊「방위계획대강」		新「방위계획대강」
육 상	자위관 定數 18만명		편성 정수 16만명 상비정원 14만5000명
자위대	부	평시 지역배치부대 12개사단,	8개사단, 6개여단, 1
	대	2개혼성단	개기갑사단
장 비	戰車	約 1200兩	약900隊
	특과화력	약1000문	약900문
해 상	부	호위함부대·地方隊10개대	7개隊
	대	소해부대 2개소해대群 육상초계기부대 16개대	1개소해隊群 13개隊
장 비	호위함	약60척	약50척
	작전용 항공기	약220기	약170기
항 공	부	요격전투기부대	
	대	10개 비행대	9개 비행대
장 비	작전용 항공기	약430기	약400기
	전투기	350기	약300기

비록 이상과 같은 군사력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방위계획대강」 보다 약 1할 정도 감축되어 있지만,⁴³⁾ 일본주변 극

43) 구방위계획대강에서는 기반적 방위력으로서 육상자위대 병력 13개 사단, 18만명, 해상자위대 병력 4개 호위함군·호위함 약 60척 기타 항공자위대 군사력 작전용 항공기 약 430기로 결정하였다. 「신방위계획대강」의 이러한 감축에는 연립여당내의 군축을 지향하는 시민당의 영향력도 작용하였지만, 그 외에도 과학기술의 진보,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자위대 병력 모집난 및 방위예산 확보면에서 제기되는 경제재정상 난관 등이 작용하였다.

동지역에서의 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지역분쟁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위대의 합리화·효율화·경량화를 한층 진척시키고 있다. 또한 「신방위계획대강」은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교환·정책협의 강화, 둘째, 공동연구 내지 공동연습·공동훈련에 관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운용면에서의 효과적인 협력태세 구축, 셋째, 장비·기술면에서의 폭넓은 상호교류 강화, 넷째, 주일미군의 주둔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각종 시책 실시 등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 1996년 4월 15일의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과 4월 17일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다. 특히 ACSA 협정은 미·일 공동훈련 등의 경우에 무기·탄약을 제외한 연료, 식량, 수송, 수리, 의료 등 도합 15개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⁴⁴⁾

한편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자위대의 PKO 및 재해과견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청과 자위대 일부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급처」를 일원화하여 「보급통제본부」 및 「관동보급처」로 재편하는 한편, 조기경계 관제기 실용실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항공자위대 「비행개발실험단」에 「조기경계기 실용시험대」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은 주변군사정보에 대한 수집·분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통제아래 자위대·위성 등을 통해 입수

44) ACSA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에서 다시 언급한다.

한 자료와 우방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취합·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정보본부」(DIH)를 신설하여 1997년 2월 발족할 예정이다. 일본의 군사정보 관련 업무는 방위청 방위국 조사부의 조사 1·2과와, 통합막료본부 제2막료실 및 육·해·공 3자위대의 조사 1·2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전국 28개 레이더기지 및 대잠초계기, 조기경계기 등을 통해 주변 상공 감시 및 소요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불가능한 정찰위성 정보 등 군사정보는 전적으로 주일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이와 같이 분산된 전략 정보 부문을 통합하여 총인원 1,582명 규모로 지휘부에 본부장(중장급), 부분장과 그 예하에 이들을 보좌하는 기술관·정보관을 두고, 총무·기획·분석·영상·전파해석 등 5개 부서를 가진 「통합정보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⁴⁵⁾ 이러한 「통합정보본부」가 설치되면, 일본은 러시아, 중국, 한반도 등 극동지역 군사정보는 물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PKO 파견지역 및 내전에 의한 난민문제, 국제테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계획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부대운용과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효율적인 부대·운용과 함께 전략 정보 수집·분석 체제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력증강은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아·태 영향력 퇴조,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 추구 등 주변 안보정세 변

45) 園生一博, “コンパクト化と機能性の追,” 『軍事研究』, 第31卷, 第3號(1996年 3月), p. 134.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본 주변 유사시 효율적인 미·일 공동대처를 위한 방위체제를 정비하고, 장래 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완될 때를 대비하여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2)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및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게 자본, 기술 및 경제원조⁴⁶⁾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제한된 대외원조 및 경제적 역할을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 및 안보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외국원조계획(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세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및 세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4차 해외원조계획 중기목표를 500억 달러로 책정하여 달성한 바 있으며(1988~1991년간 누계 380억 달러, 1992년 실적 120억 달러), 냉전종결과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관

46) 일본은 영향력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원조계획(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확대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계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 및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⁴⁷⁾

또한 일본은 1991년 4월 대외 원조제공의 4가지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원조계획을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제공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피원조국의 군사비 지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무기 수출과 수입 여부, 둘째, 민주화를 위한 노력, 셋째, 인권과 자유존중, 넷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이다. 또한 일본은 해외원조계획의 국민총생산(GNP) 비율을 1991년도의 0.31% 이상으로 높여(유엔이 선진국에 권고한 원조비율은 0.7%) 무상원조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동서냉전의 종결이후 원조 필요성이 절실한 동유럽,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의 환경대책 프로젝트나 난민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해외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⁴⁸⁾

한편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한(1992.10.14)데 이어,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1993. 3.26). 일본은 이와 같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한 유엔평화유지활

47) 「朝日新聞」, 1993. 2. 26.

48) Takao Kawakami,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동 참여실적을 쌓아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해외파병 합법화를 위한 국내법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통과시켰으며,⁴⁹⁾ 또한 앞으로 있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 작업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⁵⁰⁾ PKO협력법안 통과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장차 중·저 수준의 정치 및 군사·안보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세계 및 동북아지역에서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영향력 확대의 출발지로서 한반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의 세력감축 및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배경으로 일본은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지역분쟁 및 군비관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및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오와타 히사시(小和田 恒) 駐유엔일본대사는 1994년 6월 8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일본유엔안보리 개편 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 희망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다.⁵¹⁾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49) 桶口恒晴, “集團的自衛權と國連軍への參加をめぐる政府解釋の變遷,” 『新防衛論輯』, 第19卷, 第2號(1991年 8月), pp. 99~112.

50) 개헌논의의 쟁점에 대해서는 仲衛, “改憲論議と對外關係,” 『國防』, 第42卷 第4號(1993年 4月), pp. 8~29.

51) 『朝日新聞』, 1994. 6. 9. 이에 대해 미국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독일을 편입시키고 안보리의 산하기구들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편안을 유엔에 공식 제안함으로써(1993. 6. 30) 일본에 대하여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 지위 부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

진출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치·안보적 발언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신보수화 정계재편

한편 일본은 국내적으로 정치·군사적 대국화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적 정계재편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미해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구실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입법」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역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헌법의 확대해석 및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당시 하타 前연립내각을 주도했던 新生黨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적 역할증대 및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 도입 및 「有事立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헌법을 확대 해석하려 하거나, 개헌논의까지 활성화시키려 企圖한 바 있다.

최근 실시된 일본총선(1996. 10. 20) 과정 중에 나타난 일본국내 정당들의 안보·방위정책에 대한 정강들을 살펴보면, 총선 승리로 하시모토 단독정권을 출범시킨 자민당의 경우 專守防衛와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며 미·일관계를 축으로 한·중·러와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평화와 번영을 창조하기 위한 「자립외교」를 전개할 것을 공약하였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추진 및 신사참배 실현, 그리고 독도를 비롯한 일본 주변 도서에 대한 영유

다. 「朝日新聞」, 1993. 7. 1.

권을 주장하는 등 보수적 유권자들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웠다.⁵²⁾

또한 「보통국가론」을 내세운 바 있는 오자와 이찌로(小澤一郎)의 제1야당 신진당의 공약도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고 군사대국 불추구를 공언하면서도 유엔개혁 및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추진, 유엔 PKO에의 적극 참여와 세계적인 군축노력에서의 선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안보적 역할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유엔을 중심으로 한·미·중 등 관계국과 공동 해결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협력할 것을 공약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⁵³⁾

비록 하시모토 제2기내각(1996. 11. 7)이 소수정권의 약체정권인 점과 사민당과의 閣外協力을 하기로 하였고 제2야당인 민주당이 과거사 반성 등 온건한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계가 급격한 보수화로 치닫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일본정계의 전반적인 보수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하시모토 자민당정권 출범을 계기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서도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⁴⁾

52) 김영춘, 「일본총선 결과분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3~15.

53) 이와 같은 신진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자와 이찌로가 회장으로 있는 日本戰略研究센터가 간행한 다음 서적에 잘 나타나 있다. 日本戰略研究センター, 「世界に生きる安全保障」(東京: 原書房, 1994), pp. 97~121.

54)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輯」, 제19권, 제3호

다.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최근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와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휴전 체제 무력화 시도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일간의 협조체제 유지노력과 더불어 3국간에 부분적인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공식적인 승계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북한이 겪고 있는 수년간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체제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5년 및 1996년의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춘궁기인 1997년 4월에는 최악의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식량위기 등 경제난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 승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을 높게 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난민대책 및 전쟁발발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간의 공동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대북 쌀지원 문제도 한·일간의 공동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둘째,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된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일단 위기의 고비를 넘겼으나 향후 8년여에 걸친 약속 이행과정을 거쳐야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한 일괄타결 방안으로서 경수로 건설문제,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문제, 남북한 관계개선 문제, NPT 체제 유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과 관련된 북한의 이행사항과 경수로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 미·북관계 진전 등 미국의 이행사항이 사안별·시기별로 연계된 이행계획표이다. 따라서 제네바 합의는 곳곳에 함정과 미해결 협상사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성실한 이행의지가 없는 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제네바 합의는 한 사항의 타협이라도 실패할 경우 전체의 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북한 핵동결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일이 관여하고 있는 경수로 사업은 한국형 경수로가 선정되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경수로지원을 위한 기구인 KEDO에 일본도 참여하여 자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국간의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 휴전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남한의 휴전협정 당사자 자격을 부정한 채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해 왔다. 북한은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는 남북불가침선언, 북·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군비

축소,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남한과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였으므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료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측 대표를 철수(1994. 4)시키고, 대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1994. 5)하였으며, 중국측 정전위 대표를 철수(1994. 12)시켰다. 아울러 체코(1993. 4)에 이어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1995. 2)를 판문점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관리 및 돌발사태 방지를 위해 미·북한간 직접적인 군사협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⁵⁵⁾ 북한은 1996년 4월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 포기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북측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지 부착 중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6년 4월 5일부터 3일동안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⁵⁶⁾ 또한 최근 잠수함 침투 사건 등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시켰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55) 1995년 4월 19일과 4월 23일 무장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내에서 정찰활동을 했으며, 5월 9일에는 비무장 군인 10명이 군사분계선내에서 정찰활동을 하였다.

56) 이외에도 북한은 무장병력의 군사분계선 침투(1996. 5. 17), 북한경비정의 서해영해침범(1996. 5. 23, 6. 14), 판문점 경비원의 새로운 기장착용(1996. 6. 28)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미·일 군사동맹에 입각한 한·일 양국간의 군사협력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정치·안보적 협력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냉전이후시대 한·일간 안보협력은 냉전시기의 소련세력 봉쇄라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위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아·태지역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냉전종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미 관계개선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핵카드와 정전체제 무력화 카드를 구사하면서, 소위 「벼랑끝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도 1995년 8월 17일 국제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남사군도, 尖閣列島 및 대만 사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변국에 대하여 패권적 세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 한·일 안보협력은 군사적인 협력면에서 이러한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냉전시기에 이루어져 왔던 군사·정보면에서의 협력과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을 매개로 한 한국안보에 대한 간접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보다 확대되고 치밀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군사적인 한·일 안보협력으로서는 KEDO 등 북한핵 및 경수로 지원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문제 등 사안별로 한·일 정치·외교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일 안보협력은 핵타결이후의 화해국면에서는 쌀지원, 경수로 지원, 북·일수교 협상시의 북한개방 유도 등 비군사적인 안보협력론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북한 핵문제 및 북한체제 모순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협력적 안보협력론이 우세하였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 군사협력적 안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 대북정책: KEDO, 「4자회담」 및 대북 연착륙정책

냉전이후시대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우선 양국의 급박한 안보위협 요인인 북한 핵문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과 미·북한 관계개선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수로지원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일 양국간의 KEDO내 협조관계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공급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15개 후속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1996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1996. 5.

22), 「통행의정서」(1996. 6. 14), 「통신의정서」(1996. 6. 14)가 이미 체결되었으며, 7월 이후 협상된 「부지인수의정서」 및 「서비스의정서」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최소한 이상 5개의 의정서가 체결되면 부지 정리를 위한 일차공사가 착공될 수 있지만, 최근 북한잠수함 침투사건(9.18)으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⁵⁷⁾

현재 한·일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핵동결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중유 제공경비인 연간 5,000만~5,500만 달러의 경비중 한국은 이 경비의 부담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미 1996년도분으로서 1,900만달러의 지출을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북한은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및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다발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

57)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기업체의 재방북 불허, 적십자사의 대북 지원활동 중단, 제7차 경수로 부지조사단의 파견 유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15일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사태가 이렇게 번진다면 북·미 기본합의문의 운명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함으로써 잠수함 침투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압력이 가중될 경우 최후수단으로 핵동결 파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조선일보」 1996. 10. 16.

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명백한 수락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4자회담」에 대한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제의와 관련,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의 대북접촉시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4자회담」에서 자신이 제외되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일본 외상은 1996년 9월 4일 한·일포럼 제4차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측면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케다 외상은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북·일 수교협상이 앞으로 재개될 것임을 전제로 일본은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 경로를 통해 “북한이 하루빨리 「4자회담」에 임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남북대화과 「4자회담」에 잘 되어야 북·일관계도 잘된다”는 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⁵⁸⁾

그러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對韓 협조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대북한 연착륙정책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북한에 대한 쌀 추가지원을 고려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북한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북경에서 북한과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갖고 있다.⁵⁹⁾

한편 김정일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체제유지와 이를 위한 경제

58) 「朝日新聞」, 1996. 9. 5.

59) 북한과 일본은 수교교섭을 위한 과장급 접촉을 12월 14일 북경에서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每日新聞」, 1996. 12. 18.

재건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제까지의 자력갱생 노선을 포기하는 등 대담한 정책전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야 하나, 북한 지도부는 현재 급격한 대외개방으로 체제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대담한 대외개방 정책 대신 소폭적인 변화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보려 하고 있다. 즉 북한은 체제유지에 위협한 요소는 배제하고 경제재건에 유리한 요소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재건은 상호 모순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일 양국의 평가이다.⁶⁰⁾ 따라서 한·일 양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가능한 한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안정시키고자 하는 연착륙정책을 미국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⁶¹⁾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연착륙정책은 1995년 12월 미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⁶²⁾ 1996년 1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결정하였고, 일본에 대하여는 쌀 추가지원과 중유대금의 부담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1

60) 김학준, “북한은 붕괴로 가고 있는가,” 서울신문사,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서울: 서울신문사, 1996), pp. 33~59; 오코노기 마사오,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pp. 305~318.

61) 미국의 주도로 추진된 대북한 연착륙정책은 첫째, 선지원, 후약속이행, 둘째, 미국의 주도권 장악, 셋째, 관계국의 명확한 사전동의 불필요 등의 3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62)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는 워싱턴의 아시아협회에서의 연설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아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그 후 미정부관계자는 북한의 연착륙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월 21일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에서 미국정부는 북한이 원하지 않아도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식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6년 2월 2일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에 200만달러를 제공하였다.⁶³⁾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따라 일본은 중유대금의 부담과 제3차 쌀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월 23일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이 거부한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대금 1,9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제3차 대북한 쌀지원을 한국으로부터 양해받기 위해 연립여당의 한국방문단 파견을 검토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연착륙정책은 일본의 중유비용 부담 결정 및 쌀지원 시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이에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북한 연착륙 정책을 둘러싼 한·미·일간의 미묘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남북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일본도 북한 핵사찰의 완전실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보시킨 채, 경수로 2기 및 중유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합의 이행을 강행하였으며, 「4자회담」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한 연착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KEDO 및 「4자회담」

63) 富山泰, “美國は北朝鮮のより軟らかなる硬着陸をH指す,” 『世界週報』, Vol. 77, no. 12(1996. 4. 2), pp. 6~9.

64) 그러나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국내의 반일분위기로 인해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 방한이 연기되었다.

등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한 한 한·미와의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대북 연착륙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시 대북한 경제지원 고려 등 보다 유연한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협력

한반도 유사시 한·일협력은 북한 핵문제나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등으로 유엔에 의한 경제·군사적 제재나 한·미·일에 의한 집단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와,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로서,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지원하고 수많은 난민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구하는 것이다. 1994년 북한의 핵개발 추진 의혹이 팽배해 있을 때, 유엔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단행을 고려하고 일본정부도 유엔의 경제제재조치 단행,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북한으로부터 주변제국에 유출되는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그 후 사태가 호전되자 연구를 중단하였으나, 최근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증대하자 붕괴후의 사태를 겨냥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 동맹체제하에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미군의 개입을 원활히 하고 후방지역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내체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유사시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있어 상호 협의하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제약 및 한·미와의 군사일체화를 우려하

는 일본내 여론 때문에 한·일간의 협력은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선별적인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우

북한의 핵위기 악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긴급사태 발생시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사시 대책」 개요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결의될 경우 일본정부는 ①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 대하여 협력, ②북한과 한·미측이 교전상태에 들어갈 경우 미군에 대한 지원, ③피난민의 수송, ④자위대법 제76조에 기초한 방위출동, 즉 「자위전쟁」 등 4단계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⁵⁾

일본은 이러한 유사시 대책보고서에서 국내법적으로 대북한 제재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할 경우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하였다.

(가)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재일조선인 등에 의한 북한에 대한 송금이나 투자, 북한과의 무역, 선박, 항공기 왕래와 인적 왕래를

65) 내각관방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늦어도 2~3일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제재발동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長谷川熙, “朝鮮半島有事の對應: 日本政府の極秘シナリオ,” 『AERA』, No. 23(1994. 6. 6), pp. 13~14.

각각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재일조총련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언제라도 결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이 친족을 만나기 위하여 북한을 단기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비인도적인 조치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현행법으로 대응가능한 재일조선인의 탈세 적발을 고려하였지만, 이러한 조치가 초래할 반발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외로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총련산하의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는 18년 전 일본국세청과 5개항이 넘는 합의사항을 정해 놓았는 바, 그 1항은 “조선인상공인 모두의 세금문제는 조선상공회와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미국측도 우려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송금도 탈세조사를 통해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경우 대부분 현행법으로 실시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방위청 주도로 참여하게 될 제재 조치 가운데는 현행법으로 실행에 옮기기 상당히 곤란한 항목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경제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일본이 경제제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낸 도표이다.⁶⁶⁾

66) 長谷川熙, “朝鮮半島有事の對應: 日本政府の極秘シナリオ,” pp. 14~15.

<표 2> 北韓에 對한 유엔安保理의 經濟制裁決議案이 채택될 경우 日本의 協力

○ 協力가능 △ 부분적으로 協力 가능 × 協力 불가능	
大藏省 등이 豫想하고 있는要請項目	法的根據 및 問題點
①送金停止 (送金規制 및 携帶輸金)	○ 外爲法·大藏省告示 (效果 회의적, 人道的 問題)
②資産凍結	○ 外爲法·大藏省告示 (강한 반발 유발문제)
③脫稅摘發	○
通産·法務·運輸省	
①禁輸措置 (食糧·醫藥品等 人造적 物품 제외)	○ 貿管令 (對日非難 增大문제)
②資本거래規制	○ 무역 및 무역外 거래등 管理에 關한 通産省令
③仲介貿易거래規制	○ 외환령
④船舶·航空機 탑승 禁止	○ 運輸省 장관의 許可 권한 (1國만 排除해야 하는 문제)
⑤상선 운항제한	○ 출입국 관리令 (對日비난 증대)
⑥상선 운항自肅 勤告	○ (對日비난 증대)
⑦出入國制限	○ 出入國管理令, 官房장관 담화 등으로 실시 (인도적 問題)
⑧一時 귀국자의 再入國 불허	△ 法務大臣告示 (인도적 問題 및 국내적 반발)
⑨國內에서의 行動 감시	△
防衛廳	
①情報交換	○
②物品(물·기름 등)의 貸付	△ 物品管理法29條로 部分적으로 가 능한 부분도 있지만 신규 입법 필 요
③輸送等の 役務提供	×
④환자의 운송	× (식량·연료·의료·탄약·숙소·수송·통 신·수리等)
⑤기타 편의 제공	×
⑥환자 진료	○ 자위대 병원等에서 가능
⑦해상검사(臨檢)	× 신규 입법 필요

(나) 해상검사 및 해상봉쇄

일본정부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참여할 경우 일본방위청 주도로 해상검사 및 해상봉쇄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자위대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해상검사 및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신규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일본정부는 해상검사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북한과 한·미측간 교전해역까지 접근한 후 해상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전투에 개입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상검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은 내용에 따라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에서의 금품 제공이나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부대에 대한 일본자위대 파견과는 달리, 대북한 제재 참여를 위한 일본의 해상검사 실시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미군사 행동과 일체화시키고 전쟁 당사국이 되도록 만들 위험성이 크다. 또한 해상봉쇄도 일본이 직접 참가하여 선박을 검색하거나 함상 저지 행동을 취하는 경우 미군의 무력행사와의 일체성 문제를 야기하여 집단적 자위권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⁶⁸⁾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사입법이나 나아가 장기적으로

67) 長谷川熙, “朝鮮半島有事の對應: 日本政府の極秘シナリオ,” p. 14. 해상검사란 유엔의 경제제재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를 위반하는 선박이 북한지역에 출입항하지 못하도록 일정해역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행 자위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공해만이 아니라 일본영해에서도 해상검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위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68) 小川和久, 「新北朝鮮と日本: 朝鮮半島の有事と日本の危機管理」(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4), pp. 207~220.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문제까지 고려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2) 한반도 분쟁의 경우

일본은 한반도 분쟁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6년 4월 17일에 발표된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등 「극동유사」를 상정한 對美 방위협력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⁶⁹⁾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관련, 미·일 양국은 1996년 9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간 외무·국방장관 회담인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일명 2+2)에서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의 가능한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1997년 가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하였다.⁷⁰⁾

69)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1978년에 작성된 것으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상정하는 사태 즉 일본유사사태 하에서 미·일 방위협력 방향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었으며, 이후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미·일 양국간 공동의 작전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냉전종결과 함께 미·일 양국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증시되었던 일본유사시에 대비한 협력방향과 함께 미·일 안보조약 제6조가 상정하는 사태 즉 극동유사시에 대비한 미·일 안보협력지침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70) 「朝日新聞」, 1996. 9. 21.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위권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대미협력 방법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은 극동유사시에 대비하여 기존의 미·일 안보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간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검토항목으로 ①후방지원 등의 대미지원조치, ②연안경비와 중요시설 경비 내지 테러대책, ③경제제재, ④재외일본인이나 외국인의 구출, ⑤대량난민 대책, ⑥사전협의 등 6항목을 제시하였으며, ①대량피난민구출, ②일본인구출, ③연안경비 및 테러대책, ④대미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친 작업 그룹을 편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⁷¹⁾

(가) 후방지원 등 대미지원조치

일본정부는 다양한 대미지원 조치들이 현행법령하에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법령개정 작업이나 유사입법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²⁾

첫째, 미군이 일본내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미군에 의한 자위대 기지나 민간공항·항만의 이용에 대하여는 미·일 지위협정에 기초하여 공동사용 협정을 체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지 소음대책에 관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주변 주민의 동의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항의 경우는 그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분쟁시 미군의 일본내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71) 森本敏, “朝鮮半島と日本の安全保障,” 『新防衛論輯』, 第24卷 第2號(1996年 9月), pp. 78~79.

72) 井坂公明, “日米防衛協力のポイントはここだ,” 『世界週報』, Vol. 77, no. 19, pp. 16~17.

둘째,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중요한 검토항목은 ①미국 대신 실시하고 있는 보급품 등의 물자조달, ②미함선·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 물품 貸付, ③미군, 장비품 등의 수송, ④조난한 미군의 수색·구난, ⑤미군에 대한 의료활동, ⑥미군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①의 물자조달은 방위시설청이 대신 실시할 수 있다. ②의 급유 등 물품의 대부는 항공기에 대한 급유에 관하여 자위대의 비행장에 불시착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인정되고 있다. 타국의 군함에 대한 급유는 1991년의 걸프전 직후 페르시아만에 소해정을 파견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실시한 예가 있지만, 확대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급유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해 물품관리법이나 자위대법의 개정 등 새로운 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의 「미군 및 장비품 등의 수송」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수송이외의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의 「수색·구난」은 자위대법의 재해파견의 규정에 의하여 대응 가능하며, ⑤의 「의료활동」에 대하여는 「자위대원의 진료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⑥의 「정보제공」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6가지 후방지원에 있어서도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위험성이 있는 대미협력은 헌법상의 제약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미온적인 지원입장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

도 이러한 양국간의 애매한 동맹관계를 실질적이고 보다 분명한 상호지원적 동맹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헌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투가 진행 중인 전선에 대한 무기·탄약의 수송이나 전선에서의 의료활동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선에 인접한 지역 즉 회색지역(grey zone)까지의 의료품이나 식량 수송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회색지역에 포함되는 후방지원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⁷³⁾ 다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에 대한 일본의 임무별 지원 가능여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⁷⁴⁾

<표 3>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에 대한 지원

①安保條約第6條에 기초한 施設, 區域의 提供	○	有事시 사전 협의의 對象
②정보제공	○	
③물자 등의 수송, 서비스 제공	×	신규 입법 필요
④의료 행위(국내·국외)	△	외국 영토내에서의 行動은 불가
⑤기타 후방지원	×	
⑥해상검사(臨檢)	×	신규 입법 필요
⑦기뢰의 제거	×	遺棄 기뢰만 제거 可
⑧군사경비 등의 부담	△	걸프전쟁時의 대응 참고
防衛出動[自衛隊法76條]		
76條發動 要件, 방위출동대기명령(77條) 발동의 시기 내지 요건 등 有事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피난민 수송		
①일본인 구출	×	자위대법 개정 필요
②外國人難民輸送	△	난민수용시설 및 자금 필요

73) 일본국내에서는 대미 후방지원과 관련, 자민당이 “일본은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서 물, 식료품, 의료의 제공 등 후방지원을 하여야 한다”(야마자키다쿠 정조회장)고 주장하고 있다. Taku Yamasaki, “Japan’s Domestic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East Asia: Towards a New Era of Cooperation*, a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Gaston Sigu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and Yomiuri Shimbun, Washinton D.C., May 16~18, 1996.

74) 長谷川熙, “朝鮮半島有事の對應: 日本政府の極秘シナリオ,” p. 15.

한편, 일본은 1996년 4월 15일 미·일 공동훈련 등의 경우에 무기·탄약을 제외한 연료·식량 등의 물품과 수송·수리·의료 등 총 15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지정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11월 4일부터 2주간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동해상 홋카이도(北海道) 오이타(大分)현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훈련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에 따라 미군에 대하여 자위대의 식료품 및 연료제공과 병력운송 등의 훈련을 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와 순양함, 프리깃함, 구축함 등에 급유하였다. 미 7함대는 한국과 합동훈련을 한 뒤 동해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일본과도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는데,⁷⁵⁾ 북한은 미·일 합동훈련시 일본 자위대 함선이 미함정에 대하여 급유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이 미군과 함께 조선침략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⁷⁶⁾

이와 같은 ACSA 협정은 미·일 공동훈련시 또는 유엔평화유지 활동 혹은 국제구호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미·일 상호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에 의한 대미지원 품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한반도 戰時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에 따라 일본이 미군에 제공할 후방지원 품목을 나타낸 도표이다.⁷⁷⁾

75) 「東京新聞」, 1996. 11. 29.

76) 「로동신문」, 1996. 12. 6.

77) 畑田重夫, 「安保問題のすべて: 安保大改悪と日米共同宣言」(東京: 學習の友社, 1996), p. 45.

<표 4> 物品·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區 分	
식 료 품	식료품, 식사 제공, 조리기구 및 同類品
물	물, 급수에 필요한 용구 및 同類品
숙 박	숙박설비 내지·목욕설비 이용, 침구류 및 同類品
수 송 (공수포함)	사람 또는 물품의 수송, 수송용 자재 및 同類品
연료·유지· 윤활유	연료, 유지 및 윤활유, 급유, 급유에 필요한 용구 및 同類品
피 복	피복, 피복의 보수 및 同類品
통 신	통신 설비의 이용, 통신 기기 및 同類品
의료업무	진료, 의료기구 및 同類品
기타 지원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세탁, 전기공급 및 同類品
보 관	창고 내지 냉장 저장실에 일시적인 보관 및 類似 서비스
시설 이용	건물, 훈련시설 및 주차장의 일시적 이용 및 類似 서비스
훈련업무	지도원의 파견, 교육조련용 자재, 훈련용 소모품 및 同類品
부품·구성품	군용항공기, 군용차량, 군용선박의 부품 및 구성품
수리·정비	수리 및 정비, 수리 및 정비용 기기 등 同類品
공항·항만업무	항공기의 이착륙, 선박의 출입항에 대한 지원, 하역작업 지원

(나) 기뢰제거 등 연안경비 및 테러대책

한반도 등의 「극동유사」를 상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는 기뢰제거 등 연안경비 및 테러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바, 한·일간에도 간접적인 안보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우선 기뢰제거는 소유자를 모르는 부유기뢰의 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영해에서의 기뢰제거라면 현행법으로도 자위대가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영해내 특히 북한영해에서 상륙작전에 대비해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위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일본영해 밖에서의 기뢰의 제거 및 처리는 일본의 자위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군의 무력행사와의 일체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걸프전에서는 해상자위대가 기뢰처리를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것은 전투종결후의 뒤처리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영해에서 일본의 기뢰제거 작전 참여는 일단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법제정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테러대책과 관련,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테러공격 가능성이다. 북한은 6만명에서 10만명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2,000명은 잠입, 파괴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예요원으로 여겨진다. 유사시 일본으로부터 미군의 북한폭격이 시행되고 있을 때 그 요원의 일부가 일본에 잠입하여 원자력발전소나 신칸센 철도, 공항,

기지, 관청 등을 폭파, 습격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부대의 침입에 대하여 일본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방위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위출동」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또는 「위험이 있는 경우」 수상이 명령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사전승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긴급할 경우 직접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방위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일본은 전시태세에 들어가고 자위대는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외에 방위청은 지사를 통해서 민간의 병원, 진료소를 관리하고 토지, 가옥을 수용하며, 의료, 건설, 수송 등의 종사자에게 명령을 발할 수 있다.⁷⁸⁾

이 경우 자위대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고, 해상보안청은 방위청장관의 지휘하에 들어간다. 지방공공단체, 경찰, 소방소도 자위대에 대한 협력 의무가 주어진다.

북한에 의한 테러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 특수부대에 대한 動靜 파악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 북한의 테러 공격에 대항한 한·일간의 정보교환 등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다) 재외일본인 구출 및 대량 난민대책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이나 북한체제 붕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본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전용기를 사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자위대 수송기를 사용할 계획을

78) 長谷川熙, “朝鮮半島有事の對應: 日本政府の極秘シナリオ,” p. 15.

세우고 있다. 이 경우 한국과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인 등 외국인의 동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역할과의 일체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받는 등 일본내에서 집단자위권 논쟁 마저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위대 함선에 의한 구출은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현행법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인도적인 목적일지라도 자위대는 파견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단 재외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機 파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⁷⁹⁾

한편 난민문제와 관련, 일본자위대는 피난민의 수송이나 수용에 협력할 수 있다. 단지 피난민 수가 많을 경우 시설확보 문제가 제기된다. 조난한 피난민의 수색·구난 및 진료 등의 인명구조는 현행 자위대법의 재해 파견의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군인이었던 북한인이 무장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유입될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귀환한 10만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으로 재입국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⁸⁰⁾

한국도 난민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도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50km의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5%인 2,000만명이 집중해 있어 인구과밀에 의한 범죄의 증가, 공해, 교통난 등 모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인구 2,300만명 중 10%

79) 그러나 이법안은 국회내에 해외군사개입에 대한 우려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80) 志方俊之, 「極東有事」(東京: クレスト, 1996), pp. 113~116.

만 남으로 온다고 하여도 수도권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또한 전쟁을 치른 남북한간의 지역간 갈등도 심각할 것이며 이 갈등은 21세기 후반이 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난민문제에 대비하여 한·일간에는 상호 협의 및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96년 4월 緒方貞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금후 예상되는 난민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협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향후 북한의 난민문제가 양국에 있어서 최대의 안보협력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유사입법

일본정부는 현행법령으로는 경제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위대의 활동이나 교전중의 미군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자위대법의 개정 이외에도 각종 법령의 개정, 유사시에 대비한 새로운 입법조치 등 유사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시시설을 특정지역에 급히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이 지역이 사유림이라면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일본정부는 이러한 토지의 긴급 징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내의 현행법 개정 대상에는 자위대법 제 76조, 제 77조 즉 자위대의 출동과 출동대기 명령의 발동 등에 대한 규정이 검토되고 있다.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전쟁」으로서 교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유사입법의 목적이다.

북한에 대한 위기대책에 대해서는 하타 쓰도무(羽田孜) 전수상도 1994년 5월 24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엔의 결정과는 별도의 틀 즉 한·미·일에 의한 독자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내부에서 긴급시에 대비한 대책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유사입법 추진에 대해 한국민의 우려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상호 충분한 협의·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일 군사교류

한·일 양국은 안보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신뢰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정부는 지금까지 양국의 국민감정을 충분히 배려하여 신뢰조성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군인교류, 고위급레벨에서의 국방관계자의 상호방문 및 협의 등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일본의 방위대학교와 한국의 사관학교간에는 1980년대초부터 소규모의 인적교류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또한 1994년 이래 양국간 국방관계자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9년과 1990년의 日방위청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례로 1994년 4월 한국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였고, 1994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국의 방위정책 담당 실무

자들의 대화가 있었으며, 1995년 2월에는 일본의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처음으로 방한하여 한국의 합참의장과 회담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한국해군 연습함대가 일본을 방문하여 해상자위대와 각종 친선행사를 가졌으며, 1996년 9월 3일에는 1945년 일본패망 이후 처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 2척이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12월 8~10일에는 스기야마 시게루(杉山藩) 일본통합막료회의 의장이 방한하여 한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과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전방지역 군부대도 방문하였다.⁸¹⁾ 한편 한·일간에는 1994년 11월 「공중우발 충돌방지조약」이 체결되는 등 군사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라.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한·일 안보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무대는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었다. ARF는 아·태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이다. 1994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RF에서는 총 18개국이 참가하여, 아·태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남중국해 문제, 캄보디아 문제, 북한 핵문제, 신뢰구축방안 그리고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특히 제1차 ARF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지역안보 의제 중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며, 한·일 양국을 비롯한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북한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81) 「세계일보」, 1996. 12. 6.

아·태지역 안보 및 세계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역안보 의제로는 유일하게 회의종료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ARF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게 하는데 협력하였다.

또한 1995년 8월 부루나이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제2차 ARF에서는 베트남이 ASEAN의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캄보디아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총 19개국 외무장관들이 참가하였다. 제2차 ARF에서 참가국들은 ARF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해 냈는 바, 의장성명으로 발표된 주요 합의사항에는 주요목표와 3단계(①신뢰구축 증진, ②예방외교 개발, ③분쟁해결 노력)의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향후 ARF가 아·태지역내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간 공식적 다자협력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의장성명에서는 한반도문제를 아·태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팔라렘푸르 미·북 경수로 협상을 환영하였으며, 1994년 10월 21일 채택될 제네바합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재개를 촉구하고 나아가 KEDO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한편 한국은 제1차 ARF 기간중 고위간부회의(ARF-SOM)을 통하여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 구상을 제안하였다. NEASED 구상은 동북아지역의 한반도문제, 북한 핵문제,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군비증강 추세, 일·러 영토분쟁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NEASED가 동북아지역에서의 예방외교와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ARF와 협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일본도 지지를 보냈고, 중국도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NEASED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제고되었다.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하여 한·일간에 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무대는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이다. NEACD는 미국정부의 후원하에 비정부·민간차원에서 1993년 7월 샌디에고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미·일·중·러 등 동북아 지역 5개국간에 모두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⁸²⁾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어 군비경쟁 및 분쟁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협의체이다. 일본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1996.1.8~10)에서 세계군사력의 30%가 집중된 동북아지역에는 다자안보협력의 부재, 한반도 분단 등 불안정 요소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안보균형 구축의 기초가 될 상호안심조치(Mutual Reassurance Measures: MRM)

82) NEACD는 준비회의(93.7, 미국 샌디에고), 제1차 회의(93.10, 미국 샌디에고), 제2차 회의(94.5, 일본 도쿄), 제3차 회의(95.4, 러시아 모스크바), 제4차 회의(96.1, 중국 북경), 그리고 제5차 회의(96.9, 서울) 순으로 개최되었다.

등을 개발·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은 행후 10년간 국제적 MRM 분야에서 1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자위대의 PKO 참여 등을 통하여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은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일본의 제의에 대하여 한국도 한반도의 안보불안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가 역내 국가들간에 활발히 논의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해 일본의 독자세력화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간에 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IV. 한·일 안보협력 방안

1. 기본방향

냉전시기 한·미·일 전략적 협조체제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일관계는 냉전이후시기에 접어들면서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일 역할분담 요구 증대로 인해 보다 긴밀하고 직접적인 유대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가 미국 및 유럽의 권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동북아지역내 안보역할 증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안보역할 증대를 일단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항한 한·미 연합전력의 증강에 一助하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한국이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일본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반대하게 될 경우, 한국은 미·일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증대될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과 능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과정에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일 안보협력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첫째, 한반도 유사시 등을 상정한 군사협력에 집중하는 방법과 둘째, 경제·외교분야에서의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2가지 접근법이 있다. 즉 한·일 안보협력은 크게 군사적인 안보협력과 비

군사적인 안보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한·일 안보협력은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의 비군사적인 안보협력과 군사적인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군사적인 협력보다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의 비군사적인 안보협력 즉 정치·외교적 안보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 「4자회담」 문제, 북한체제 안정문제 등 대북한정책에서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북한정책은 한·일양측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이 난제에 대하여 양국이 협조하여 유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계기로 양국은 21세기에 대비한 보다 폭넓은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순조롭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북한 정책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통일과정 관리 및 통일이후에 제기될 제반 정치·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점진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한·일 군사협력은 안보대화, 군사교류, 군사협력(공동연구, 정보교환, 공동작전) 등 다양한 수준 가운데 일단 기본적인 신뢰구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안보대화나 군사교류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뢰구축의 단계가 없이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감정 등 장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군사력의 직접 동원 및 한국과의 공동작전 주장도 있으나, 일본이 직접 작전에 참여한다거나 해상자위대가 미군작전을 호위한다거나 하는 경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자극하게 되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환경 등 안보상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일본의 역할을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에 대한 물품 및 수송지원 등의 후방 병참지원 역할 정도 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독자적 세력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은 미군이 지역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대북한정책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어내는 대가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문제, 일본 자위대의 PKO 참여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 PKO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견줄 만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주 목표로, 우선 핵문제 및 북한정권 안정관리문제 등 한반도의 정치·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후방지원 등 군사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의 국내법체제 정비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이상과 같은 안보협력을 기

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한·일공동의 안보역할 증대 및 공동의 안보이익 확보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세부 추진방안

가. 대북정책 협력방안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IAEA의 사찰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신고 2개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경수로 지원과 연계되어 원자로의 핵심부품이 북한에 공급되기 직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간에는 IAEA에서 북한의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핵사찰과 함께 남북상호핵사찰 수용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수로 지원과 관련,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재정부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소요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자회담」 문제와 관련, 현재 일본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1996년 4월 한·미 제주도 회담에서 제의된 「4자회담」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안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4자회담」이 성사된 후 한반도 안보 및 평화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자국이 참여하는 「2+2+2」

혹은 「2+4」 형식의 다자회담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일본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의 대북접촉시 「4자회담」 수용을 촉구해 주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4자회담」 성사후 남북한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에 대한 보장에 러시아와 함께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등 일본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4자회담」에서 제외된데 대한 불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4자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본과 즉각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북 연착륙정책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빠져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식량사정이 호전되도록 북한에 쌀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대북한 쌀지원이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와 양해하에 남북관계 진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1996년 9월 18일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직후인 1996년 9월 26일 뉴욕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현단계에서 대북한 식량원조를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듯이 북한의 위협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대북지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대북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일 수교교섭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협조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대북 수교교섭을 본격화할 경우, 일본에 대해 남북관계 진

전과 보조를 맞춰 북·일수교교섭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북·일수교교섭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북한 지원은 순수히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성을 완화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통일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한국은 이를 적극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한 지원이 북한의 대남도발을 위한 물질 기반을 제공해주거나 남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파생시킨다면 한국은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나. 군사협력 증진방안

한·일 양국은 향후 실질적인 군사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신뢰구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상호 군사교류를 향후 보다 긴밀히 추진하고, 함정 상호방문의 정례화, 상대국 군사훈련에 옵서버 파견 등의 조치를 통해 한·일양국간 신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일 군사교류는 초보적인 신뢰구축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한·일양국의 국민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없이 급속한 군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주변국에 대하여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군사훈련과 관련, 현시점에서 한·일 양국간에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양국의 민족감정과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지만, 양국이 현재 미태평양함대가 2년마다 주최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합동연습(RIMPAC)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점차 다양한 군사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가 구축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자간의 공동군사훈련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이 군사행동으로 실행될 때 미·일동맹을 어떻게 원활히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수준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역할을 규정한 舊「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미·일간 공동연구)에 있어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방위를 위한 일본의 대미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적 조치들을 일본정부가 취해 나가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도 兩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미간 및 미·일간 양자간 협의회의에도 한·미·일 3자간 군사협의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및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싼 3자간 안보협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대북한 경제제재를 포함하여)에 대비한 3자간의 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3국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역할분담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협의회에서 한·일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파견될 미군에게 어떤 후방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한국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다자간 안보협약체를 통한 협력

최근 북한의 핵개발문제 및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그리고 중국 등 역내국가들의 군비경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안보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역내 차원의 다자적 접근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부·민간 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자간안보협약체는 내재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유지비용이 들며 현안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양국간에 맺어진 안보조약 등을 대체할 정도로 지역안보를 보장해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구성되면 지역국가들 사이에 지역내 안보 및 군축문제에 대한 토의가 활성화되어 역내국가간 상대방에 대한 안보인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자를 추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⁸³⁾ 특히 역내국가들간의

안보문제에 대한 협의 및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보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하며, 점차로 이를 발전시켜 지역국가간 군축조치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이 시도 될 경우 한·일 양국은 이러한 다자간 협의체에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가 주변국들의 군비통제문제와 함께 다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일은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 군사력을 전략적 균형에 맞추어 감축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은 1994년에 발족되어 아·태지역의 19개국·기관으로 구성된 「아세안 지역포럼」(ARF)을 통하여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1995년 제2차 ARF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3단계 협력체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ARF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문제에 관한 공동의 제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및 PKO 분야에서 협력

최근 아·태지역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83) Patrick M. Cronin, "Perspectives on Policy and Strategy," *Strategic Review*, Spring 1992. pp. 62~69.

특히 핵무기, 핵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 핵기술이전, 생화학무기 등이 이 지역의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미사일관련기술 수출규제(MTCR), 생물무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조약 등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NPT에 가입하고 있지만 핵문제를 야기하는 등 NPT의 성실한 준수에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이며, MTCR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대미관계가 양호했을 때는 MTCR을 존중하였지만, 대미관계가 과거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이 이를 존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일 양국은 위 협정들에 대하여 조인하거나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1992년부터 재래식무기의 국제간 이전 상황에 대하여 유엔에 등록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의 분류를 따랐기 때문에 등록대상에 7가지 무기(장비품)를 포함시켰을 뿐 아시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다 소형의 화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아시아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무기이전 규제 대책을 고안하는데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군대파견 경험이 적지만 꾸준히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600명, 모잠비크 50명을 PKO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한국도 PKO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증대에 견줄 만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소말리아 250명, 서사하라에 소규모의 의료부대를 참가시켰다.

한·일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군 산하에서 휴전감시를 위한 군사감시 요원을 약간명 파견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긴급 전개를 위하여 800명의 병력을 대기시킬 용의가 있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한·일 양국이 PKO 합동군을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평화유지활동 참여 경험을 서로 교환하여 보다 효과적인 부대파견을 가능하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냉전이후시대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북아전략 및 미·일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에 따라 과거에 미국을 매개로 추진되어 오던 간접적인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 및 체제불안 문제 등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한·일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우선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사교류 활성화 등 군사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의 군사협력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간에는 때에 따라서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위협요인이 있는 반면에 위협인식 및 대처방식 그리고 중요도 순위면에서 양국간에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하여 한국과 공동의 대응전략을 갖기를 희망하나,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후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양국간에는 과거사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로 국민감정이 양국간 군사협력을 용인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나 경제지원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에 관한 비군사적인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그 이후에 양국간 군사교류를 활성화 하거나 유엔 및 다자안보기구를 통한 군사적 안보협력을 추진하

는 등 직접적인 군사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 및 한·일 안보협력에 대하여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 및 한·일 안보협력은 미·일 동맹관계 하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내 안정자 역할 수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정자 혹은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 결국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직면한 북한문제와 북한체제 연착륙문제 및 통일비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실질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관리 및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공동인식과 실질협력 실적을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은 21세기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관계자 뿐만 아니라 정치엘리트 상호간에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 및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상호이해 증진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안보협력은 주변국 및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하며, 미국이 지역내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영춘. 「일본총선결과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옥렬. 「韓國과 美·日關係論」. 서울: 一潮閣, 1973.
- 민족통일연구원. 「소련의 동북아정책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서울: 정음사, 1985.
- 石井修. 「冷戰と美日關係」. 東京: ジャパンタイムズ, 1989.
- 小此木政夫. 「日本と北朝鮮」. 東京: PHP研究所, 1991.
- 小川和久. 「新北朝鮮と日本: 朝鮮半島の有事と日本の危機管理」.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4.
- 岩永健吉. 「戰後日本の政黨と外交」.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5.
- 永井陽之助. 「多極世界の構造」. 東京: 中央公論社, 1973.
- 日本戰略研究センタ. 「世界に生きる安全保障」. 東京: 原書房, 1994.
- 田久保忠衛. 「レーガン戰略と日本の破局」. 東京: 講談社, 1981.
- 畑田重夫. 「安保問題のすべて: 安保大改悪と日米共同宣言」. 東京: 學習の友社, 1996.
- 佐藤達也. 「朝鮮半島の軍事地圖」. 東京: 社會評論社, 1985.
- 志方俊之. 「極東有事」. 東京: クレスト, 1996.
- 桶渡由美. 「戰後政治と日·米關係」.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0.
-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4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2. 논문

-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5집 2호. 1992년 겨울.
- 김학준. “북한은 붕괴로 가고 있는가.”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서울: 서울신문사, 1996.
- 박경서. “최근 미·일관계 추이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책연구」. 통권 27호. 1993년 봄.
- 연현식.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한국정치학회 1996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연현식.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가능성과 한계.” 「세계정치의 쟁점과 이해」 서울: 박영사, 1993.
- 이상구. “한·미·일 군사제휴관계의 전개과정.” 「국제정치논총」. 제 10집. 1970.
- 李元炯. “日·韓外交交渉過程の分析.” 慶應義塾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9
- 한영구. “한국 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권 5호. 1990년 5월.
- 富山泰. “美國は北朝鮮のより軟らかなる硬着陸を目指す.” 「世界週報」. Vol. 77, No. 12. 1996.
- 森本敏. “朝鮮半島と日本の安全保障.” 「新防衛論集」. 第24卷 第2號. 1996年 9月.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検証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 第19巻 第3號. 1991年 12月.

오코노기 마사오.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園生一博. “コンパクト化と機能性の迫.” 「軍事研究」. 第31巻 第3號. 1996年 3月.

園生一博. “自衛隊97年度業務計劃.” 「軍事研究」. 第31巻 第11號. 1996年 11月.

長谷川熙. “朝鮮半島有事の對應: 日本政府の極秘シナリオ.” 「AER A」. No. 23. 1994.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군축문제자료」. No. 151. 1993. 6.

井坂公明. “日米防衛協力のポイントはここだ.” 「世界週報」. Vol. 77, no. 19.

仲衛. “改憲論議と對外關係.” 「國防」. 第42巻 第4號. 1993年 4月.

桶口恒晴. “集團的自衛權と國連軍への參加をめぐる政府解釋の變遷.” 「新防衛論集」. 第19巻 第2號. 1991年 8月.

Andrew Marshall. “Les sources de la puissance soviétique: la puissance militaire dans les années 80.” in *La Menace soviétique*.

Jung-Suk Youn.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 Summer 1992.

Patrick M. Cronin. “Perspectives on Policy and Strategy.” *Strategic Review*. Spring 1992.

Reinhard Drifte.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in J. W. M. Chapman, R. Drifte and I. T. M. Gow. *Japan's Quest for Comprehensive Secur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Sidney Bearman. "Pouvoir et politique soviétique dans le tiers-monde: l'Asie orientale." in Christoph Bertram éd. *La Menace soviétique*. Nancy: Bibliothèque Berger-Levrault, 1981.

Taku Yamasaki. "Japan's Domestic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East Asia: Towards a New Era of Cooperation*. a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Gaston Sigu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and Yomiuri Shimbun. Washinton D.C. May 16~18. 1996.

3. 기타

「세계일보」

「조선일보」

「로동신문」

「東京新聞」

「毎日新聞」

「世界週報」

「朝雲」

「朝日新聞」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日本의 核政策
- 93-27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 96-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6-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研究報告書 96-2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9252, FAX :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